1. 제정이유

“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*”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것임

* 재사용전지 관련「전안법」개정(‘22.10.18.) 및 시행(‘23.10.19.)

2. 주요내용

가. **(일반 요구사항)** 관련정보 수집, 보관 및 분해 등 재사용전지에 대한 취급·보관 등의 전처리를 위한 요구사항 규정

나. **(품질 및 성능 요구사항)** 사전 검사(3항목) 및 전기적 검사(5항목)의 대상,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을 규정

다. **(기능안전성 검토)** BMS에 대한 S/W 검증 및 과충전 전압·전류시험, 과열제어시험을 규정 (KOLAS 공인기관의 자격 획득 필요)

* 해당 항목은 ESS용 전지(새제품)의 안전기준(KC 62619 8절) 인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제정 전문 별첨

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호

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고시안

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※ 제정내용은 붙임(안전기준 KC 10031(전문)) 참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KC62619:2023 8절의 적용례) 국가기술표준원 고시(제2023-0275)에 따른 적용일에도 불구하고 KC62619:2023 8절은 본 안전기준 시행일에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※ 제정내용은 붙임(안전기준 KC 10031(전문)) 참조